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

2019년 7월 1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6.30.(일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9. 6. 30.(일)	담당부서	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
담당과장	홍순파 과장(043-870-5450)	담 당 자	백희선 주무관(043-870-5460)

제조업 르네상스 | 세계 4대 제조강국 Made in Korea

계단식 소형 사다리(스텝 스툴) 제품 안전관리 강화한다

- 국가기술표준원, 스텝 스툴에 대한 제품안전시험 의무화 -

□ 가정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**계단식 소형 사다리 제품인 스텝 스툴**(Step stool)*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.

* 스텝 스툴 : 최대하중 150kg, 높이 1m 이하의 계단식 소형 사다리

○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(원장 이승우)은 스텝 스툴을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인 '휴대용 사다리'로 분류하고, **스텝 스툴에 대한 안전기준 신설**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'휴대용 사다리 안전기준 개정안'을 행정예고 했다.

< 계단식 소형 사다리(스텝 스툴) 제품 >



□ 신설되는 안전기준에 따라 **금속 또는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스텝 스툴**은 **▲최소 150kg의 하중**을 견디고 ▲바닥면과 충분한 마찰력(마찰계수 0.2 이상)을 통해 **미끄러짐을 방지**해야 하며,

○ 발 헛디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**디딤판은 일정 면적 이상(가로 30cm, 세로 8cm)으로 제작**돼야 한다.

○ 안전기준이 시행되면, 스텝 스툴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**제품의 출고·통관 전에 모델별로 제품시험을 실시**해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고, **KC 마크를 부착·판매**해야 한다.

□ 그 밖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,

○ **주택용 발붙임사다리**(A형 사다리)의 올라설 수 있는 **최고 높이는 3.5m에서 2m**로, **일자형 사다리**의 **최대 길이는 12m에서 10m**로, **원예용 사다리**의 **최고 높이는 3m**로 제한하여, 가정용 용도에 맞게 규격을 조정하였다.

□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**휴대용 사다리 안전기준 개정안**의 행정예고(~8.17)를 마친 후, 법제처 심사 및 공포 절차를 거쳐 **내년 하반기부터 시행**할 예정이다.

□ 국가기술표준원 박정욱 제품안전정책국장은 "가정에서 사용하는 용도에 맞게 사다리 규격을 조정했고, 스텝 스툴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안전기준을 마련했다"면서,

○ "스텝 스툴 구매시 KC마크 부착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될 것"이라고 말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백희선 주무관(☎ 043-870-546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